

建築士事務所의 運營과 稅制

李 承 文

一. 머리말

營業稅法과 기타 間接稅法이 附加価値稅法으로 개편되기 이전에도 建築土業에 대하여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營業稅가 면제되었고, 附加価値稅로 간접세체계가 전환된 이후에도 附加価値稅를 면제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의 경우보다는 稅務問題에 대하여 덜 곤혹스러운 것이기는 허나 현실은 반드시 그러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세금이라고 하면 国稅이든 地方稅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을 터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事業은 특히所得稅에 관한 신경이 더 가기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높은 所得率에다 최저 8%에서 부터 최고 70%까지 17단계 超過累進稅率이 적용되고 있고, 다시 방위세와 주민세가 부가되어 所得金額의 계산과 納稅수속도 복잡하여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를 전혀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둘 수 없는 노릇이고 보면 脱稅의 방법으로서가 아니고 節稅의 수단으로서 현행법을 잘 익히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所得稅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納稅를 돕고자 單獨建築士事務所가 合同建築士事務所로 개편 운영하게 됨에 따른 세제상의 문제점과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관하여 필자의 소견을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二. 單獨事業과 共同事業의 차이점

建築士 1개인이 單獨事務所를 운영하는 경우가 單獨事業이며, 수인이 合同으로 共同事務所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共同事業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법률상 權利義務의 主体는 개인과 法人으로 한정되어 있다. 현실은 그 중간체인 단체가 수없이 존재하며 그 중간단체에 대하여 財產關係의 법률을 어떻게 적용시키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合同建築士事務所의 경우에도 法人格을 취득한다면 法律上 그리 복잡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개인과 법인의 중간형태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財產關係뿐만 아니라 稅務問題도 복잡하게 야기된다.

현행법상 개인과 법인사이의 중간단체로서는 組合과 人格없는 社團 및 財團이 있다. 組合은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단체로서 존립의 意義를 가지나 法律效果는 구성원 전부에게 귀속되고, 資產과 負債는 共同으로 소유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계약관계로서의 결합체이다. 그러나 人格없는 社團 및 財團은 法人으로서의 組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무관청의 许可를 얻지 못하였거나 登記가 되지 아니한 상태의 단체이다.

人格없는 社團의 재산관계는 總有 또는 合有로 나타난다. 그러나 人格없는 財團은 대다수의 경우가 信託의 관계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실질귀속관계를 중요시 하는 稅法에 있어서는 이러한 法律關係에 착안하여 개인과 법인간의 중간단체를 두가지의 형태로서 규율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人格없는 社團과 財團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것과 出損된 基本財產이 있는 경우만은 法人으로 보고 法人관계의 法律을 적용하며, 그외는 모두가 개인관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단체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나 代表者 또는 管理人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단체 자체를 1개인으로 보고 과세하게 됨으로 單獨事業의 경우와 같이 모든 稅法이 적용된다.

그러나 組合의 경우는 그와 다르다. 組合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재산관계가 그 구성원에게 귀속됨으로 소득세도 그 구성원 각자에게 부과된다. 그렇지만 組合도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단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외판상 法適用은 그 組合을 개인으로 대우를 하고 있다.

즉組合은 단체성과 개별성이 동시 나타나므로 단체성에 대하여는 1개인과 같이 法을 적용하고 개별성에는 구성원각자에게 法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체성에 관한 것으로서는 납세자번호증을 하나로 교부받는 1사업으로 취급하게 됨으로 구성원별로 납세자번호증을 교부받는 單獨事業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있다.

共同事業으로서組合의 단체성에 기인한 단점으로서는 단독사업의 경우보다 절대비한도액보다 구성원 1人에 연100만원이 줄고, 구성원 전원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기장의무를 판정하게 됨으로 각개인으로서는 간이장부의무자로도 전체로보면 복식기장의무자가 되어 지급조사제출의무, 재무제표작성제출의무등 제반의무가 부여되어 그 의무불이행시는 加算税를 촉징받는 불이익이 뒤따르며, 記帳稅額控除의 특전도 없어진다.

설령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78년도 기준으로 간이장부의무자는 35.1%의 所得標準率을 적용받으나 복식기장의무자는 40.5%라는 高率의 소득표준을 적용되며, 納稅義務도 連帶責任을 지게됨으로 다른 구성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組合은 단독사업의 경우보다 규모의 경제로서 경영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많은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技術用役法에 의한 專門技術用役業者로서 3개이상의 전문분야를 등록하여 소득세액의 25%(法人税는 5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세무관리도 집중관리되므로 단독사업의 경우처럼 각個人마다 稅務管理를 할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이 훨씬 덜어지는 장점도 있다.

개별성에 관한 것으로서는 구성원별로組合에서 생긴 所得을 所得分配比率 또는 持分比率에 의하여 배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所得稅를 申告納付하며,組合에 대한 제반加算税도 앞서의 比率에 의하여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合同建築士事務所의 운영이 과연組合으로서의事業體 즉共同事業에 해당할 것인가 또는 人格없는社團이나財團에 해당할 것인가? 合同建築士事務所는 商法에 의한法人도 아니며, 그렇다고 目的에 의하여出損된財產도 없는 것이므로財團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

社團은 非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団體이므로民法의 규정에 의한社團의 성격도 없다. 따라서 合同建築士事務所는 單獨事業이나組合体로서共同事業중 어느 한 형태이다.

建築士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이상의 設計업무에 대하여는 合同建築士事務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은 동業務에 連帶責任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외에는 事務所의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事務所의 運營方法에 대하

여建築士의 자의적인 合議에 따르도록 한 것이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따라서 合同建築士事務所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그 구성별로 單獨的으로 할 것인가 또는組合形態로서共同事業体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완전한 임의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三.所得金額의 計算에 대하여

建築士의 業務도 다른 사업의 경우와 같이 소득금액의 계산은 일반적인理論에 의하는 것이며, 별도의 特別規定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建築士의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収益의 實현시기에 관한 것이다. 현행所得稅法에 의하면 設計用役은 用役業으로, 監理用役은 自由職業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수익의 인식시점도 약간씩 서로 다르다.

監理用役은 人的用役의 제공이므로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대금영수일이 수익실현시기이나 約定이 없는 경우에는 用役提供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設計用役은 監理用役과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設計用役은 일종의 都給이 契約에 의한것이므로 수익의 실현시기는 目的物 즉 설계도면이 완성되어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시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체결이 되고 완료되는 設計用役의 수입과 비용은 그 年度에 전부 측정되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연도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완료되지 아니한 設計用役은 계약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은 측정할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의費用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어야 한다.

연도말에 미완성된 設計用役은 그 계약기간이 장단에 따라 6월미만의 것은 短期都給契約으로 수입과 비용전부를 차연도로 이월시킨다. 왜냐하면 도급에 의한 用役提供의 수익실현시기는 그 用役提供을 완료하여 目的物을 인도한 날로 한다는 원칙 규정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月 이상인 長期都給契約은 課稅의 평준화를 위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즉 契約金額에 따른 費用이 투입되어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입금액도 확정된다는 가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設計用役提供을 완료한 때에 총예정원가 {契約金額(1 -所得標準率)} 만 투입된다고 보고, 그 총예정원에 실제 투입된 비용의 비율만큼 契約金額에 대한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투입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지조사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이 방

법을 쓸 수 없다. 따라서 추계조사를 하는 때에는 都給者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四. 記帳문제에 대하여

모든 사업자는 일기장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연 수입금액 6,000만원이상)과 복식기장의무자(연 수입금액이 2억원이상)로 분류하여 기장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벌칙규정이 있다.

금년에 주목할만한 것은 간이장부의무자와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소득표준율 27%에 30%와 50%를 각각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 실사기피자는 한층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간이장부의무자가 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10%공제 있는 반면에 복식기장의무자는 10%의 가산세가 있으므로 실제 기장하는 데 대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간이장부의무자 이상은 기장을 하는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2년이상 실지조사나 서면결정을 받고 조사금액과 신고금액대비 5%이내이고 지급조서나 계산서제출 불성실비율이 15%이내일 경우에는 신고 그대로를 인정하여 주는 확정신고결정제도가 신설되고있으며, 녹색신고자로서 지정을 받아 세제상의 특혜도 받을 수 있다.

五. 計算書의 제출제도에 대하여

建築士의 업무는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附加価值税의 免稅事業者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나 면세사업자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1979. 1. 1부터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事業者간의 거래는 재화 또는 用役의 공급자가 計算書를 4부작성하여 2부를 공급받는 者에게 교부하고 각 1매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신기한내에 제출하고, 사업자와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計算書제출의무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없으나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질서법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六. 源泉徵収에 대하여

事業者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자유직업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지급받는자가 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税)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建築士事務所의 경우에 設計用役의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法理를 이해한 것이다. 현행법상 사업소득으로서는 自由職業所得(그것도 그중 일부에 국한됨)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도록 된 것을 用役業에 까지 확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自由職業所得인 監理收入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이다.

七. 맷는말

이상으로써 건축사업부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점을 대충 간추려 보았으나 여기서 서술되지 아니한 문제점도 한둘이 아닐것이다. 사실 현행 소득세법의 法條文數가 말해주듯 방대한 양에 이르는 것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은 조세문제만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조차도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무릇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같고 닦을때 비로소 그 제도의 발전이 기대되듯이 기회 있을때마다 문제점을 하나씩 정리하여 해결해 간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大韓商工会議所稅務相談役
稅務士

검소한 생활로 물가고를 이기자
하루위해 낭비말고 백년위해 저축하자